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경 제 안 보 를 위 한 공 급 망 안 정 화
지 원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
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, 공급망 통계 작성·조사 체계를 신
설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세부
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, 자료 제출 방식과 위기 대응
훈련 근거를 마련하며, 기금 연차보고서 사항 보완 및 매점매석행위 지
정·고시 절차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 중 “고위공무원단”을 “차관, 고위공무원단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관련 통계(이하 “공급망 통계”라 한다)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안보품목등으로 하고, 그 조사대상은 해당 품목을 생산, 수출입,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. ② 공급망 통계의 구체적인 조사사항, 조사방법, 조사주기, 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문서, 전자 문서, 제6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 조 기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, 공공기관,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 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34조의2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 ①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

2.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39조(매점매석행위의 지정) ①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	제10조(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·② (생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다음	③ -----
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	-----
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-----.
1. 재정경제부 및 관계 중앙행	1. -----
정기관의 <u>고위공무원단에 속</u>	----- <u>차관, 고위공무원단</u> -----
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	-----
무원	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</u>
	<u>성대상 및 조사대상) 법 제12조</u>
	<u>제1항에 따른 공급망 관련 통계</u>
	<u>(이하 “공급망 통계“라 한다)의</u>
	<u>작성대상의 범위는 법 제13조에</u>
	<u>따라 지정된 경제안보품목등으</u>
	<u>로 하고, 그 조사대상은 해당 품</u>
	<u>목을 생산, 수출입, 유통 또는</u>
	<u>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. ② 공</u>
	<u>급망 통계의 구체적인 조사사</u>
	<u>항, 조사방법, 조사주기, 결과의</u>
	<u>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</u>
	<u>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</u>

제15조(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·절차) ① ~ ⑦ (생략)

<신설>

제22조(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)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한다.

제15조(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방법·절차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자료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료를 문서, 전자 문서, 제6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22조(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·운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수습에 필요한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34조의2 ① 법 제43조의2제2항 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기금 운용과 관련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

<신 설>

2.그 밖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
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
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차보고서
의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
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
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
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
다.

제39조(매점매석행위의 지정) ①
재정경제부 장관이 법 제50조의
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
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
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점매석
행위와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
되는 매점매석행위를 구분하여
지정할 수 있다.

②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1항의
규정에 의하여 매점매석행위를
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
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15 - 7877